

가. 보험계약의 개요

- ☐ 보험회사 :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 모 집 자 : 영업1팀, 고소영 (연락처 02-123-4567)
☐ 기본계약 보험기간 : 2011. 3. 1. 부터 2012. 3. 1. 까지
☐ 보험상품명 : 개인종합배상책임보험(Comprehensive Personal Liability-II)
☐ 목적물소재지 : 서울시 한남동 귀족빌라 123-456 외 15개소
☐ 보험계약관계자
 ■ 보험계약자 : 장동건
 ■ 피보험자 : 장동건 아들 5명, 딸 5명 (남/여, ○세)
☐ 보험료 : 987.654.321 원 (납입방법 : 일시납)
☐ 보험계약 주요 체결 내용

구분	담보	지급 사유	보상한도액		총보험료
기본 계약	제3자 법률적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끼친 상해, 질병과 그에 기인하는 사망 및 타인 의 재산에 가한 손상 또는 파괴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적배상책임	대인 (BI)	KRW 200,000,000-1인당 KRW 200,000,000-1사고당 KRW 200,000,000-년간총	KRW123,345,648
			대물 (PD)	KRW 200,000,000-1사고당 KRW 200,000,000-년간총	
			단일 (CSL)	해당 없음	
			자기 부담금	KRW 2000,000-1사고당	
	타인의 의료비	타인이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 있을 때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에 대한 의료비	대인 (BI)	미가입	없어요
			자기 부담금	해당무	
선택 계약	임차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임대한 건물 , 고정자산의 손해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자 에 대한 배상책임	대물 (PD)	KRW 200,000,000-1사고당 KRW 200,000,000-년간총	500만원
			자기 부담금	KRW 2000,000-1사고당	
	화재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 리하는 재산의 화재로 인 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 에 대한 배상책임	대물 (PD)	가입거절	안들음
			자기 부담금	-	

※ 특약의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은 기본계약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보험계약자의 권리]

① 보험계약 청약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절차 및 방법】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1) 아래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시거나, 2)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 또는 당사 한국지점(☎ 02-3702-5800)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 신청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wo IFC 7층 (07326)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주) 한국지점

(전화: 3702-5800)

②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 보험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2.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의무]

① 보험계약전 알릴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료 납입의무, 납입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및 부활(효력회복)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장을 받을 수 없으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에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합니다.

납입독촉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독촉기간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계약의 무효(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① 계약의 해지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계약의 해지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② 해지환급금 관련 사항 등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 ☐ 책임보험에서는 사고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과실이 적용되어 손해액이 차감될 수 있으며, 과실은 같거나 비슷한 사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선례가 없는 경우는 법률자문을 통해 과실을 산정합니다.
- ☐ 책임보험이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반드시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보상도 되지 않습니다.

[양도에 관한 사항]

- ☐ 보험증권상의 권리의 양도는 그 승낙(동의)이 이 보험증권에 배서 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다수 보험계약 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배상책임보험, 법률비용보상보험, 홀인원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보험 등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확장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 ☐ 피보험자는 (a) 기명피보험자 (b) 동거하는 배우자나 친척 및 피보험자의 보호하에 있는 20세 이하의 미성년자 (c)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동물 및 선박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개인 및 단체 (d) 농경용 트랙터, 트레일러, 자동식 또는 동물견인식 농구와 관련하여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인 고용인으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 이 보험증권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비영리목적에 수반되는 것 이외에 영업을 목적으로 한 피보험자의 활동 또는 증권에 규정된 것 이외에 피보험자가 소유, 임대, 관리하는 시설물과 관련된 행위나 태만
 - (1) 시설물이나 인접도로로부터 떨어져있는 동안의 자동차 (2) 시설물에서 떨어져 있는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임대한 선박으로서 10마력을 초과하거나 또는 선체의 길이가 25피트를 초과하는 선박 (3) 비행기 또는 상기 자동차, 선박으로부터의 적재, 하역중인 경우
 - 고의적으로 피보험자의 지시로 인한 신체상해, 질병, 사망 또는 파고
 - (1) 피보험자가 고용하고 있는 동안 근로자재해보상법에 의하여 보상되는 경우에 종업원이 입은 신체상해, 질병, 사망 (2)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시점에 종업원을 위하여 유효한 근로자재해보상금을 지불하는 보험계약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고용하고 있는 입주고용인이 입은 신체상해, 질병, 사망
 - 담보조건 [제3자법률적배상책임]의 경우, 시설물과 관련한 서면계약하에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외에 여하한 계약이나 협정하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 책임
 - 담보조건 [제3자법률적배상책임]의 경우, 피보험자가 관리 보호하거나 사용, 임대한 재산에 대한 손상이나 파고.
 - 담보조건 [타인의 의료비]의 경우, (1) 근로자재해보상법하에서 보상되는 경우의 피보험자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의 신체상해, 질병 또는 사망 (2) 기명피보험자 및 동거가족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3) 정기적으로 시설물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류중인 사람이 입은 신체상해, 질병 또는 그러한 업무에 기인한 사고로 입은 상해
 -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전쟁, 침략, 외적의 행위, 적대행위(선전포고 유무를 불문), 내란, 반란, 모반, 혁명, 군사 및 찬탈자의 강제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 주요 사례안내]-임차 건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 부지급 사례
피보험자가 임차 건물에 대하여 부주의로 무거운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대리석 바닥이 깨어지게 되어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사례.

→ 면책조항 f. under coverage A, to injury to or destruction of property used by, rented to or in the care(보호), custody(관리) or control(통제) of the insured 에 해당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고로 처리하였음.

마. 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① 예금자보호제도

[계약자, 납입자가 개인인 경우]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계약자가, 납입자가 법인인 경우]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모집자나 당사 한국지점(02-3702-58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ms-ins.co.kr) 또는 손해보험협회 상담센터(02-3702-8500)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통보합니다.

바. 기타 유의사항

①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

보험계약체결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입니다.

- ▶ 보험회사는 서면, 녹취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의 과거 병력 등 계약전 알릴사항을 수령합니다.

- ▶ 보험회사는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직접 보험료를 납입받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계약자가 불가피하게 보험모집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하셔야 합니다.

② 보험계약의 전환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해지공제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의 전환시에는 충분한 전환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③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④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⑤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보험사기(고의사고, 허위사고, 피해과장, 사고 후 보험가입 등)는 형법상 금지된 범죄입니다.

⑥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1. 보험금 대리청구인 제도란?

보험사고(예: 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대리청구인은 왜 지정해야 하나요?

보험계약은 질병(치매 등)이나 상해 등의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의 특징으로 인해 계약자가 본인을 위한 (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사고 발생시 인식불명 등으로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계약자가 자신을 위한 치매보험 가입 후 치매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치매보험금 청구가 곤란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여 두시면 대리청구인이 가입자(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방법

가입하신 계약 중 본인을 위한 계약「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경우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보험회사에 대리청구인 지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청구인 신청 연락처 : 3702 - 5847

⑦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예금, 대출 등 금융거래계좌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고자 금융감독원(금감원 통합콜센터 1332)에서 조회를 원하는 상속인 등에게 금융계좌 보유 유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사망사실(사망일자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상속인 신분증

※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라도 피보험자가 법원으로부터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받은 경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 직접 신청시 필요서류, 법원판결문(원본), 등기사항 증명서 (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⑧ 기타 유의사항

□ 교차모집 관련 유의사항

교차모집의 시행으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해당회사의 상품이 맞는지 또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보험설계사의 성명이 실제 모집한 보험설계사와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번호	주요 설명 내용
1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자에 대한 정보(소속, 지위)에 관한 사항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입 기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특약별납입기간에 대한 주의설명 포함)
2	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및 보장내역 (갱신평약의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주의 설명 포함)
4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5	계약의 해지 및 무효, 적용이율, 해지환급금, 중도인출, 갱신평 특약, 유배당보험계약, 상품별 특이사항 등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6	예금자보호,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 등 보험계약자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험모집자의 업무범위(보험료 고지의무 수령 가능 여부), 보험계약전환, 소멸시효, 계약변경,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유의사항
8	갱신평특약(실손의료비특약 제외)에 가입하신 경우 갱신평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갱신평주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설명
9	보험금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에 관한 사항

<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확인 >

- ◆ 본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 내용’을 모집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는 설명받은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 상품설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세부 설명자료를 상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자 확인]

- 보험모집자 고소영 (은)는 위 내용에 대하여 보험계약자 장동건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서를 교부하였습니다.

2011년	2월	28일	보험모집자	오는님	(인)
-------	----	-----	-------	-----	-----

[보험계약자 확인]

- 보험모집자 고소영 (으)로부터 상품설명서, 요율견적서(RQ)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고 설명 듣고 이해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 여부(보호 또는 비보호) 및 보호한도에 대하여 설명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13월	금요일	보험계약자	간다고	(인)
-------	-----	-----	-------	-----	-----

<별지> 『표1 : 보험상품의 특성정보 아이콘 설명』

아이콘	설명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 합산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 비보호 상품: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음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 상품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상품: 다수 상품을 중복 가입 하더라도 가입 보험회사 별로 보험금을 비례 · 분담하여 보상
	청약일부터 30일 이내(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